# 성주군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우리군 분뇨·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의 낮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며,

○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(2018. 9)에서 처리수수료를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고시를 통해 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(안) 계획에 따라 인상한 수수료를 별도로 고시하여 적용(안 제8조)

○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“징수”를 “납부”로 변경 (안 제9조)

○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「하수도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10. 10. ~ 10. 31.(20일)

○ 규제심사 : 심사완료(기획감사실-9379, 2019.09.20.)

○ 성별영향평가 : 평가완료(2019A경북성주 040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수료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고시를 통해 능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써,

○ 분뇨·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(안) 계획에 따라 인상한 수수료를 별도로 고시하여 적용하고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과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와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